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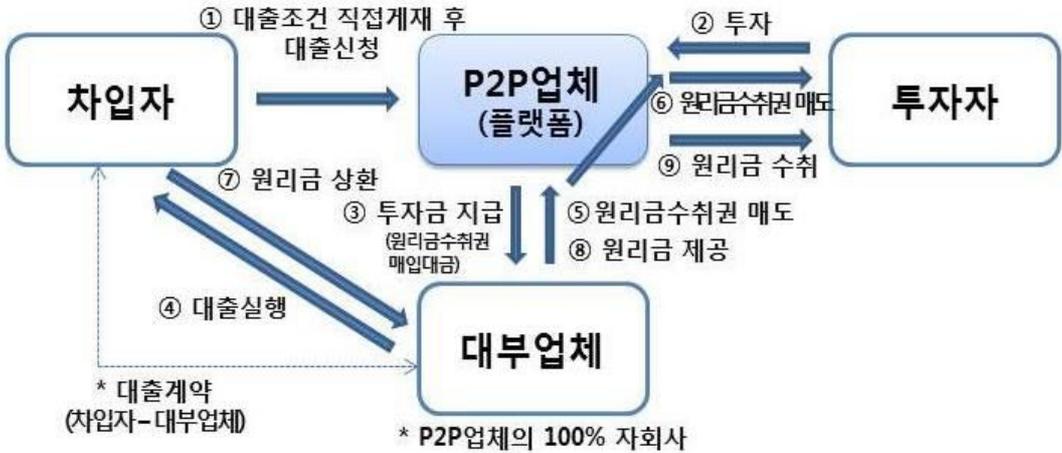


P2P(Peer to Peer)

○ P2P

가

<P2P 대출의 구조(대부업체 연계형)>



* 출처: 금융위원회

○

(美)

(中) e

P2P

가

8

P2P

5

‘P2P

가

P2P



1.

() 가

() P2P P2P

3

가

○

가

가

○

가

(10 1)

()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1. “여신회사”는 본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채권의 추심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의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신회사”가 판단한 경우	1. “여신회사”는 본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채권의 추심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수차례 유선상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직접 채권상환의 지가 없음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현장방문 진행 등 채권의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신회사”가 판단한 경우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해 채권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채권 회수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회수성공수수료를 “여신회사”가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해 채권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채권 회수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추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여신

<p>추심을 위임한 업체에 지불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투자금의 손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p>	<p>회사”가 수취할 수 있으며, 이는 “여신회사”가 추심을 위임한 업체에 지불하는 추심수수료 및 “여신회사”가 직접 투여한 채권추심비용의 보전을 위한 추심성공수수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p> <p>a. 채권 연체기간 6개월 미만 : 회수금액의 최대 15%</p> <p>b. 채권 연체기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회수금액의 최대 20%</p> <p>c. 채권 연체기간 12개월 이상 : 회수금액의 최대 30%</p>
---	--

2.

() 가 ,

() 가

가 ,

3

가 .

○

○

(10 1)

() ,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p>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건의 연체일이 365일을 초과할 경우 여신업체는 해당 채권을 신용회복기금 혹은 여신업체가 지정하는 업체에 투자자의 동의 없이 매각할 수 있습니다.</p>	<p>①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건 중 투자자의 투자금과 투자수익률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건에 한하여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는 해당 채권을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지정하는 업체에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은 투자자에게 조기상환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는 채권을 매각하기 3일 전까지 제20조 (회원에 대한 통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해관계 있는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이러한 사항을 사이트에 게시합니다.</p> <p>② 채권을 매각하게 되는 경우 중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건의 연체일이 90일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채권을 할인하여 매각할 수 있고, 해당 채권의 매각 금액에서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잔여금을 회사에 지급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급받은 금액을 자금출연 비율에 맞게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채권의 매각으로 인해 투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3.

()

() P2P 가 가 P2P
가 , 가
‘ , ‘ ,

○

가

가

○

.(7 1)

()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회사와 여신업체는 귀하의 투자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와 여신업체에게 귀하의 투자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한 법적, 사회적, 물질적 배상 및 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는 귀하의 투자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 책임 지지 않으며, 귀하는 회사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귀하의 투자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한 법적, 사회적, 물질적 배상 및 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

3

() P2P

가

‘ ,

가 가

.(449 1)

○

가

○

가

(11 3)

()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투자자”는 “회사”의 약관에 따라 투자하여 획득한 “회사”와 “여신회사”가 제공한 지위와 권리를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라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회사”의 약관에 따라 투자하여 획득한 “회사”와 “여신회사”가 제공한 지위와 권리를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라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는 양수인이 투자회원 가입 등 결격사유가 없고 정상적인 투자회원 가입이 될 경우에는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 가

()

(催告)

가

가 가

(543 1 , 544)

○ P2P

○ 가

가

.(9 3)

()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투자자가 아래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별도의 통보 없이 투자자 자격을 박탈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아래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u>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 내지 시정을 요청하고, 이러한 이행 내지 시정이 없는 경우 해당 투자자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투자자 자격을 박탈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u>

6.

() 가 .

()

○

○ P2P

가

가 .

○ 가 ,

(12 1)

()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귀하는 본 약관과 “서비스이용약관”의 모든 조항에 동의하며, 이러한 조항들은 “회사”가 필요한 경우 “회사”의 재량 내에서 수시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고 개별통지(전자우편, sms 등)하는 방식으로 공지합니다.

7.

()

() P2P

○ P2P

○

.(14 1)

()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제소 당시의 귀하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3

[Empty rectangular box]

○ P2P

※ 붙임: 조사 대상 사업자 및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

<붙임>

사업자 (서비스명)	자의적 추심위임	채권매각 채무면제	투자손실 면책	채권양도 금지	통보없이 계약해지	약관개정 절차	부당한 합의관할
(주)테라핀테크 (테라핀딩)	○	○	○	○	○	○	○
(주)루프펀딩 (루프펀딩)	○	○	○	○	○	○	○
(주)빌리 (빌리)	○	○	○	○	○	○	○
(주)에잇퍼센트 (8퍼센트)	○	○		○	○	○	○
(주)피플펀드컴퍼니 (피플펀드)	○	○		○		○	○
(주)렌딧 (렌딧)	○	○	○	○	○	○	○
(주)투게더앱스 (투게더앱스)	○	○	○	○		○	○
팝펀딩(주) (팝펀딩)	○	○	○	○	○	○	○
(주)클라우드연구소 (펀딩플랫폼)	○	○	○	○	○	○	○
(주)펀듀 (펀듀)	○	○		○		○	○
(주)어니스트펀드 (어니스트펀드)	○	○	○	○	○	○	○